채 권 추 심 신 고

사 건 2000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

채권자 ○○○

채무자 ◇◇◇

제3채무자 ◈◈◈
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20〇〇. 〇. 〇.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〇〇〇〇원 가운데 금 〇〇〇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36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제출부수 기 타	신청서 1부 ・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고 전에 다른 압류・가압투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사집행법 제236조). ・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에도 발생하며, 계속적 수다 신고를 하여야 함. ・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최용되지 않음(민사집행법 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가 되는 때에 사장에 면사집행법 제159일 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합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집합	루 또는 배당요 공탁하고 그 리 대상인 채권 입채권이 압류 제권자들에 의한 제247조 제1항 런자들의 배당요 레 됨. 는 집행법원은 조 제2항, 제3학 행력 있는 정본	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(민 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 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미 나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 제2호). 따라서 추심신고 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 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 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
	다음 채권자에게 돌려 주는	는 등의 조치를	취해야 함.